

「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

사업장 모집공고

기술·재정능력 부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『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』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4일
화성시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: 2026. 02. ~ 2026. 12. (11개월)

다. 사업예산: 68,900천원 (도비 24,180천원, 시비 44,720천원) ※자부담 11,700천원 별도

○ 관리지원 및 성능확인: 도비 30%, 시비 70% 지원

○ 유지보수: 도비 30%, 시비 50% 지원, 자부담 20% 별도

라. 사업량: 13개소 ※8개소 선정 완료

마. 사업대상: 공고일 기준 관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3~5종 대기배출시설
설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※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 제외

2. 지원내용

구 분	소요예산	보조비율	주요내용
가. 관리지원	1.7백만원/1개소 (100% 지원)	도 30%, 시군 70%	< 관리지원 > ○ 전문기술인력의 현장 방문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(연 3회)
나. 성능확인			< 성능검사 > ○ 방지시설 본체·후드·덕트·송풍기 등의 유속, 유량, 가스 유출 여부 등을 장비를 통한 성능검사(연 1회) - 사업장별 성능검사 보고서 제공(→ 사업장, 1회)
			< 저감효율 확인 검사 > ○ 방지시설 처리효율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검사(연 1회) - 오염물질 검사서 제공(→ 사업장, 1회)
다. 유지보수	최대 3.6백만원/1개소 (80% 지원)	도 30%, 시군 50%, 자부담 20%	○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(4.5백만원 한도 / 자부담 20%)

가. 관리지원 (보조금 100%지원)

- 전문기술인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(연 3회/ 사업장)
 - 방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, 시설 상태 및 소모품 교체 등 안내
 - 사업장별 방지시설 관리 매뉴얼 제공(1회/사업장)

나. 성능확인

- (성능검사) 방지시설 본체, 후드, 덕트, 송풍기 등의 유속, 유량,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 후 성능검사 보고서 제공 (연 1회 / 사업장)
 - 대상시설: 후드, 덕트, 방지시설 본체, 송풍기 등
 - 검사항목: 제어거리(속도), 반응속도, 송풍량, 정압, 전류·전압 등
- (저감효율 확인 검사) 방지시설 처리효율 등 확인 및 측정 성적서 제공 (연 1회 / 사업장)
 - 측정지점: 사업장 방지시설의 굴뚝 측정구
 - 측정항목: 먼지, SOx, NOx, THC 등 사업장별 배출 오염물질 중 선정
(사업장별 배출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)

다. 방지사설 유지보수 (보조금 80%지원, 자부담 20%)

- (지원내용) 관리지원 및 성능확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방지사설 적정 운영을 위한 핵심 소모품 교체(수리) 등 지원
 - 국소배기장치(후드·덕트·송풍기 등), 부대설비(배관·펌프·벨트 등) 또는 방지사설 교체(수리)비 (관리지원 및 성능확인 도출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장 희망 시 우선 지원 가능)
 - 방지사설 소모품(활성탄, 여과포, 충전물 등) 교체(청소)비 ※ 방지사설 청소비 포함
 - 안전 작업환경 개선(안전난간 및 노후사다리 교체 등)
 - 아름다운 산단 미관 조성을 위한 노후 방지사설 본체 도장(페인팅)비
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수리비 (단, 가동개시일 또는 그린링크 전송확인일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 설치한 경우 제외)

3. 신청서 제출방법

가. 접수기간(연장): 2026. 06. 04.(목) ~ 2026. 06. 12.(금) 18:00

나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

※ 접수처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화성시 환경지도과

다. 제출서류: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

- 참여 신청서 1부.
- 이행각서 1부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.
-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 1부.
- 사용인감계(해당될 경우, 미제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사용함으로 간주) 1부.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중소기업 확인서 1부.
- 소상공인 확인서,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(해당되는 경우) 1부.
- (가장 최근)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1부.
- 설치(허가)신고 증명서(시설 내역, 오염물질 발생량, 공정도 등 포함) 1부.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- 연매출 증빙자료 1부.

4. 지원대상 선정방법

가.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
나.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최초 신청 사업장의 후순위로 반영
다.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최후순위로 반영

<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>

1.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(영세사업장 우선 지원) *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함.
 - 중소기업확인서 상 '소기업', '소상공인'으로 표시된 사업장
 -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장
2. 중점관리 사업장(민원다발 및 위반 사업장 우선 지원)
 - 최근 3년 이내 대기, 악취, 분진 등 동일 유형의 민원이 2회 이상 반복 접수되거나, 환경 민원이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
 - 최근 3년 이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위반으로 행정처분(개선명령, 사용중지, 과태료 등)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
3. RE100 참여 사업장으로 「기업 RE100」 참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장
4.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 -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사업장
 -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
 - 악취·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분진 발생으로 환경 민원이 빈번한 공정
 - 도장·코팅, 유기용제 세척(자동차 세척장 제외), 인쇄·접착 등 악취발생 공정
 - 소규모 연소·가열·훈연 공정 및 연마·절단 등 분진 발생 공정
 -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사업장
5. 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연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사업장 우선순위 결정

5. 기타사항
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,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자기부담비율(20%)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 가능함.
-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.
- 지자체에서 사업장 모집·선정 이후 사업 추진은 수탁기관인 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수행하고, 수탁기관의 요청 사항 등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환경지도과(☎031-5189-19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신청서 등 각종 양식 1부.

